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69호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”사회복지사업법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”사회복지  
사업법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”을 “”사회복지사업법”으로  
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률”을 “법률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 
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계획의 수립)”을 “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 
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  
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되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  
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  
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계획”을 “지원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  
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

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의 제목 “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”를 “(실태조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